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71호 2023. 11. 08.(수)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3-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09호 대산지구 골재채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4
- 의령군 공고 제2023-1315호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공고 ... 11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 1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한티로6길 2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의령군 철곡면 산북리 153-7	경상남도 의령군 철곡면 한티로6길 21	2023-11-08	한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여섯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대산지구 골재채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대산지구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의령군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채용기간
계	8명			
판매관리	3명	의령읍 대산리 (골재채취장)	골재채취장 판매관리 업무	2023.12월 부터 골재채취 종료일까지
안전관리	5명	의령읍 대산리 (골재채취장)	골재채취장 안전관리 업무	2023.12월 부터 골재채취 종료일까지

2. 응시자격

- 응시연령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의령군으로 되어 있는자 (골재채취장 인근 시군 가능)
- 기동력을 갖추고(운전면허 및 자차 소유) 판매 및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신 및 신체 건강한 자
- 판매관리 기간제근로자 지원자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자격증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우대
-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형태 및 보수

구 분	내 용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분 : 골재채취를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령군 안전관리과) · 근무기간 : 23년 12월 ~ 골재채취 완료일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일 : 주5일 ·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관리 : 월~금(07:00~16:00) - 안전관리 : 월~금(07:00~16:00) ※ 추후 근무시간 조정
근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지구 골재채취장(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소재)
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관리 : 76,960원/일(~23년 12월), 78,880원/일(24년 1월~) · 안전관리 : 76,960원/일(~23년 12월), 78,880원/일(24년 1월~)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 공제 후 지급 · 임금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본급 단가와 동일함.) · 간식비 3,000원/일 지급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격기준, 거주지 등 채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확인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면접 시험 실시
 - 5개 평가항목 평가

구 분	총 점	건강상태	거주지역	차량보유	컴 퓨 터 활용능력	안전사고 기본지식
판매관리	100	30	30	20	20	-
안전관리	100	30	30	20	-	20

- 서류전형 합격자의 평점(면접심사 합계)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의령읍 거주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함.

5. 시험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3. 11. 07. ~ 11. 14.		의령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지원 접수	'23. 11. 10. ~ 11. 14.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방문접수
서류전형 발표	'23. 11. 16.(목)		개별 통보 (1차 합격자)
2차 시험	'23. 11. 21.(화)	의령군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합격자 발표	'23. 11. 23.(목)		개별 통보 (2차 합격자)
근무시작	'23. 12월 ~ 완료일		-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장소: 경남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 접수기간: 2023. 11. 10.(금) ~ 11. 14.(화)
-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 ~ 18: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끝.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과(하천관리팀 ☎ 570 3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 가. 주 소: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최종 졸업학교를 기재합니다.
- 다. 자격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를 기재합니다.
- 라. 경 력: 근무 기관명을 명기합니다.
- 마.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합니다.
- 바.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자.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차. 기 타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의령군 대산지구 골재채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조회·확인(신원조회 등)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의령군 대산지구 골재채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조회·확인 (신원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4장 3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8.

의 령 군 수

1. 공고(신청)기간 : 2023. 11. 8. ~ 2023. 11. 16.
2. 신청대상 : 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신청사업별 대상자는 지침서 참고
3. 신청사업 :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4. 신청방법(신청서류)
 - 가.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라. 결산완료 재무제표
 - 마. 손익계산서
 - 바. 기타 증빙서류
5.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570-4143)

목 적

- 버섯배지원료의 원활한 공급 및 수확후배지의 적정처리 등을 통한 버섯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사업예산

- '24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300, 자부담 200)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 한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개소당 50억원,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50억원

사업 신청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대상자 선정

- 선정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고, 심의위원회에 앞서 시·도 추천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자료 검토 및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에게 사업신청 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서면평가하고, 사업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시·도)에 통지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최수빈 주무관 이혜빈	044-201-2240 044-201-2242

1. 사업대상자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법인인 생산자단체로서 “버섯배지원료 공급, 버섯배지 제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또는 버섯 생산”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사업대상자

- (a)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b)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c)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나.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

- (a)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b)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c)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는 자본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면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는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증빙자료 : 사업 대상년도(1년차 및 2년차) 전년도 결산 완료 재무제표로 확인하되, 전년도 자료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전년도 자료 생성시 추가 확인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조합)의 소유 토지인 경우이어야 함.
 - 사업 예정 부지에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당시 재활용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지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 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별도요건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버섯농가 및 버섯배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섯생산자(농업인) 주주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사업인 경우 15인 이상,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사업인 경우 5인 이상이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관련)이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는 버섯생산자일 것
 - * 법인은 농업인(버섯생산자) 지분이 51% 이상 점유하고, 1인당 최소 지분률은 2% 이상, 최고 30% 이하이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에도 충족해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으로 계산하여 인정)

3. 지원대상

- 버섯배지원료 생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사업
- 수확후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 * 사료화·퇴비화 정의 : 수확후배지를 50%(사료화의 경우는 30%) 이상 사용하여 건조·발효·펠릿화 등으로 처리, 그 상태로 축산농가, 배합사료의 원료 등으로 공급하거나 퇴비로 이용
 - 발효 등을 위해 미생물 등은 첨가할 수 있으나, 최종 단계가 배합사료 및 부숙 유기질 비료(퇴비, 가축분퇴비 등)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우선지원 대상 버섯류 : 양송이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감리비 등 용역비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 전에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분쇄·배합시설, 저장창고, 포장장, 출하장,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생산 및 포장 시설·장비류 : 분쇄기, 배합기, 컨베이어, 펠레타이저, 포장기, 파렛타이저 등
 - 유통관련 장비류 : 파렛트, 지게차, 페이로더 기계장비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품질관리 및 연구장비 : 현미경, 살균기, 배양기, 냉장고 등
 - 수확후배지 건조, 보관, 유통, 사료화, 퇴비화 등 제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류(건조·발효시설 등 포함)
- 공통사항 : 부지매입비나 판매시설 설치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 및 장비(차량, 농기계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3년(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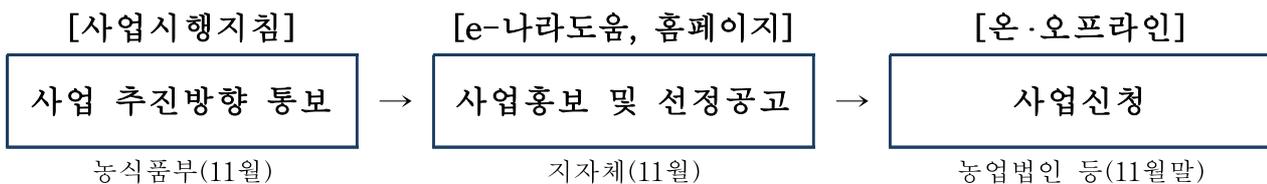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억원~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비 지원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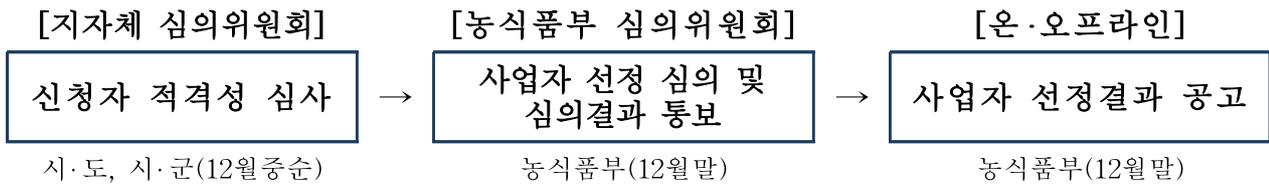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1월중순까지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10일 이상 선정공고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차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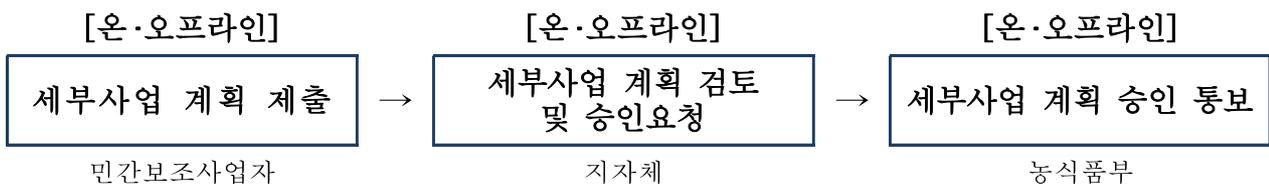
지 자 체

- 시·군 :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붙임4)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점검표(붙임4)에 따라 확인하고,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앞서 시·도 추천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자료 검토 및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에게 사업신청 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서면평가하고, 사업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시·도)에 통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역량,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 향후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 버섯 관련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지원 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자치단체에 세부사업계획 승인 통보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예산에서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지 자 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
- 지자체는 교부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8천만원 초과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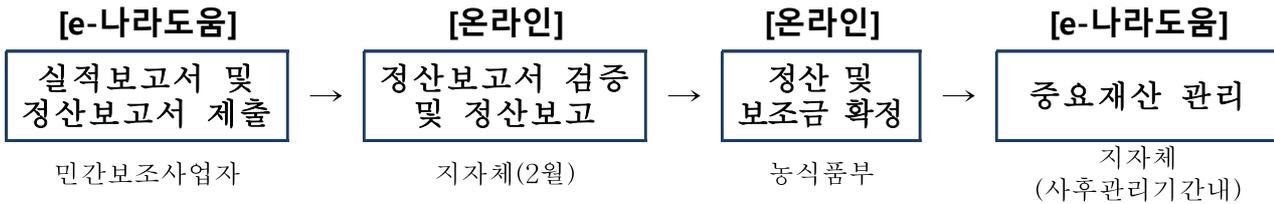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지 자 체

-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별표4를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지 자 체

- 중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IV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당해 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불용 최소화 노력

《환 류》

-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운용에 차질을 준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 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현행 (2023)	변경 (2024)	비고
II. 주요 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2년(1년차 20%, 2년차 80%)	II. 주요 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u>3년(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u>	◦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 조정
III.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부합 여부 등) 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III.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 ○ <u>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u> - <u>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u> - <u>사업대상자는 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u>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시·군에서 자체검토 및 시행하게 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2. 사업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3. 사업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II. 사업신청자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III. 신청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수행방법
3. 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추진 일정, 자금조달 방법 등 포함)
4. 생산 시설 계획(시설개요)
5. 원료 조달 및 제품 생산계획(제품별 제조공정)
6. 운영자금 조달계획
7. 유통 및 판매계획
8. 생산 및 매출목표
9. 고용인력 창출계획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IV. 기타

1. 비전
2. 추진역량
3. 지속적 성장가능성
4. 사업추진의지

※ 30매 안팎으로 작성하되, 사업자 선정 심의시 심의위원회에게 제공되어 평가에 활용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작성할 것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